

부산지방법원 2018. 9. 14 선고 2018나46230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,항소인 A 종교단체

피고,피항소인 B

변론 종결 2018. 8. 17

판결 선고 2018. 9. 14

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. 3. 15. 선고 2017가단16132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저 심판결을 취소한다.

피고는 원고에게 경상남도 양산시 J임야 13, 224㎡에 관하여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3 . 8.

28. 접수 제 465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

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조휴옥판사 김지희판사 오대훈